

전주지방법원 2020. 7. 17 선고 2018가단19561 판결 [계약금등반환청구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1. 6. 30 선고 2020나6675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20. 7. 17 선고 2018가단19561 판결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한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서경미

변 론 종 결 2020. 6. 12.

판 결 선 고 2020. 7. 17.

주 문

1.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8. 10.부터 2020. 7. 17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95%는 피고들이,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. 10. 19.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도급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지급하였던 공사대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,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원 중 5,000만 원은 원고의 처인 D과 피고들 사이의 별개의 도급계약에 따라 D이 지급한 것이므로, 원고는 5,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로써 그 반환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.

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,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2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1) 인정사실

가) 원고는 2017. 7.경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와 피고 C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E 토지와 F 토지에 공동으로 공사대금 2억 4,000만 원(계약금 7,200만 원)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태양광 시행 및 시공 도급계약(이하 '이 사건

도급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7. 7. 13. 피고들에게 5,000만 원을 지급하였다.

나) 피고들은 2017. 7. 13.경 원고로부터 세금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명의자만 D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수용하여 D을 발주자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. 원고는 2017. 10. 18.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5,000만 원을 지급하였다.

다) 원고는 2017. 11. 20.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동 시행·시공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, 이에 위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갑 제3,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, 이하 같다), 갑 제7호증,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 2)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D 명의의 도급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하게(피고들과 D 사이에 별개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) 그대로 유지되었다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동 시행·시공자이자 피고 회사의 PM/CM 매니저인 피고 C이 2017. 11. 20. 원고와 사이에 1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합의해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1억 원을 2-3일 내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금반환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다. 결국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의 청구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. 8. 10.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. 7. 17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원고는 위 1억 원에 대하여 2017. 10. 19.부터(원고는 2020. 6. 1.자 준비서면에서 2017. 11. 21.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주장을 바꾸었지만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)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, 앞서 본 이유와 2019. 6. 1.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%이므로,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.

나.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들의 주장

가) 원고와 D은 각각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으로 지급한 각 5,000만 원을 포기하고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, 피고들은 원고나 D에게 위 각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.

나) 피고 C이 2017. 11. 20. 원고에게 “돈을 돌려 드리겠다”고 한 것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한 대답이고 그 액수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소요된 비용 등을 제외하고 일부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였다.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8. 2.경 G과 태양광발전 공사계약을 체결하자 다시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해제의사를 반복하였으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.

2) 판단

위 가)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D과 피고들 사이에 별개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,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1억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(오히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), 피고의 위 가) 주장은 이유 없다.

위 나)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2017. 11. 20. 합의해제 및 1억 원의 반환 약정이 도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, 원고가 위 합의해제 후 해제 의사표시를 반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나)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안영화